

# 『2025년 경기도 양자-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』 참여기업 모집 공고

『2025년 경기도 양자-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 
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03월 13일

한국나노기술원장

## 1. 사업개요

사업목적

- 경기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및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, 최고 수준의 반도체 인프라 및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. 따라서, 국가 핵심기술인 양자분야와 경기도 내 주력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.

사업기간 : 2025. 4. ~ 11.

지원대상 : 경기도 소재 양자·반도체 관련 기업

지원규모 :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도 지원금   | 기업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합계          | 선정 수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
| ①양자-반도체 융합 R&D 지원*              | 융합 R&D 지원*         | 95백만원/년 | 19백만원 이상/년<br>(현금 50% + 현물 50%) | 114백만원 이상/년 | 4개사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지원데스크 운영(내부 전문가) | -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| 6개사      |
| ②양자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(외부 전문가) |                    | 15백만원/년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백만원       | 예산 소진시까지 |

\* (최대 2년 심화지원)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연차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지원후보 선정

## 2. 신청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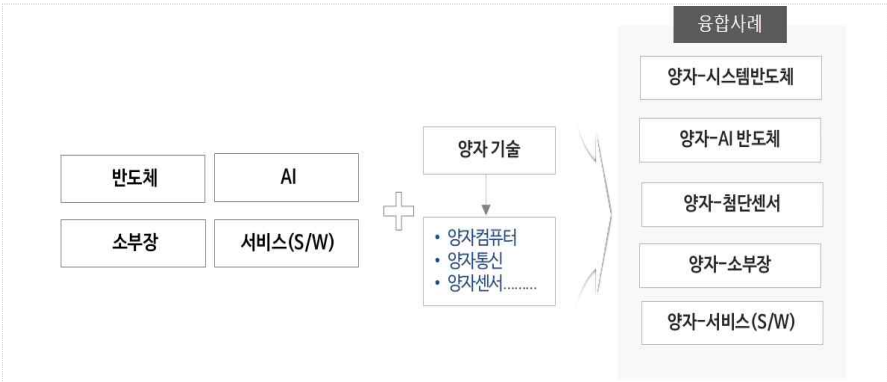
□ 道 소재 반도체·양자기술 관련 중소기업  
(H/W, S/W, 소부장 및 서비스 포함)

※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(본사 또는 사업장), 공장등록증명서,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

## 3.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

□ 사업내용

○ (융합 R&D 지원) 경기도의 강점인 공정기술 및 소부장 기술을 활용하여 양자 컴퓨터·양자센서·양자통신(중계기 포함) 개발의 핵심인 양자소자, 소부장 및 서비스(S/W) 핵심기술 고도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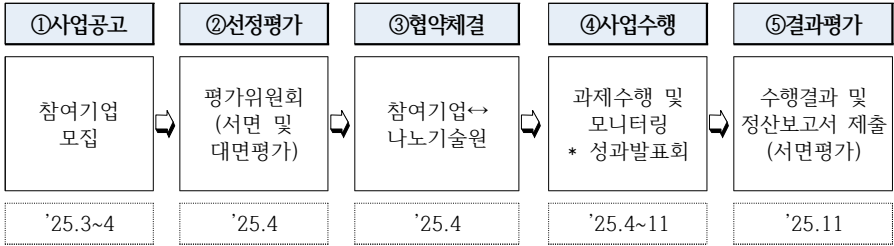
※ (사업비 구성) 인건비, 연구시설 및 장비이용료, 연구재료비 및 시작품/시제품 제작경비, 신뢰성 인증 및 시험분석비, 연구활동비 항목 내 자율적 구성(인건비는 현물계상)

○ (기업지원데스크 운영) 기술원 자체적인 기술·인력·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원 컨설턴트가 접수기업의 기술애로분석 및 단기기술지원(기술정보, 설계/해석, 시제품 제작 및 개선, 사업화 등) \* 최대 3개월

- (양자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) 양자기술 및 사업화 외부전문가의 기업 현장 방문, 기술정보 제공(특히 포함) 또는 투자처 및 수요기업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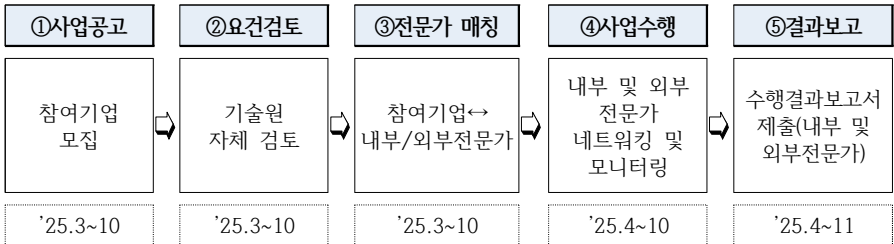
□ 추진절차

- (융합 R&D 지원)



※ 평가, 선정, 협약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·변경 될 수 있음.

- (기업지원데스크 운영 / 양자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)



#### 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융합 R&D 지원 신청기간 : 2025년 3월 19일(수) ~ 4월 18일(금) 16:00까지
- 기업지원데스크 운영 / 양자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 신청기간 :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

□ 신청서류 :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[붙임] 참조

※ ‘융합 R&D 지원’ 과 ‘기업지원데스크 운영’ 및 ‘양자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’ 의 최대 3 개까지 동시 신청 가능

□ 신청방법 : 신청서류 E-mail(hyoseon.cha@kanc.re.kr) 제출

※ 04.18 16시 도착분에 한함

□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등 문의

| 주관기관             | 전 화                 | E-mail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한국나노기술원<br>기업지원실 | 031-546-6522 / 6523 | hyoseon.cha@kanc.re.kr |

※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, 가급적 E-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5. 선정방법

□ 평가방법

- (융합 R&D 지원)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격 검토,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신청서류 서면·대면평가
- (기업지원데스크 운영 / 양자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)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, 신청자격 검토 및 예산 소진시까지 기술원 자체 검토를 통한 선착순 선정

□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

- (융합 R&D 지원) 사업 아이템의 추진계획 및 적정성, 기술성(혁신성), 시장성 및 경제성 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

| 구분         | 평가지표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추진계획 및 적정성 | ◦ 추진계획 적정성 및 목표수준 등의 구체성 | 10 |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(3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사업계획의 명확성           | 1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한국나노기술원과의 연계(양자랩, 나노랩 활용 등) 가능성 | 10         |
| 기술성<br>(30)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기술의 우수성 및 기술구현의 현실성             | 1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개발 기술의 타기술(경쟁자) 대비 독창성·차별성(혁신성) | 1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기술 보유 현황 (인증, 특허 등) 및 획득 가능성    | 10         |
| 시장성 및 경제성<br>등 사업성<br>창출효과<br>(40) | ◦ 개발 기술의 사업성 및 시장진출 과급효과          | 1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기술 개발을 통한 매출 및 고용효과             | 1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해당 기술 및 제품의 수출가능성               | 1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◦ 수요고객 연계 및 투자가능성                 | 10         |
| <b>합 계</b>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100</b> |

- (기업지원데스크 운영 / 양자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) 기술컨설팅의 필요성, 시급성, 내부 및 외부 전문가 매칭 가능성, 반도체-양자 융합 R&D로 연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-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7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(70점 미만 시 탈락)
- 평가 결과는 이메일로 개별통보 되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

## 6. 기타사항

- 이행보증보험 가입
- ‘융합 R&D 지원’ 선정기업은 도 지원금의 100%에 대해 협약 전 이행(지급) 보증보증증권에 가입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지원금은 선정기업의 지원금 전용통장으로 先 지급됨(단,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)
- ※ 발급 수수료는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해야 함(사업비로 불인정)

□ 향후 최종 연차평가 결과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사업비의 50% 환수 조치, 90점 이상의 경우 추가 사업위원회를 통한 2차년도 지원후보 결정

□ 지원제외대상(융합 R&D 지원에 한함)

※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원제의 대상이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, 선정 및 협약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확인 시 지원 제외 및 협약이 무효처리 됨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- 휴·폐업중인 기업
-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
  - 가. 부도기업
  - 나. 법정관리, 화의기업(단,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)
  - 다. 개인회생·파산·면책권자(참여기업 대표, 과제책임자 등)
  - 라.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인 중소(견)기업
  - 마.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(견)기업
-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-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업,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「경기도 범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, 「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범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(2024.1.19.)」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범위반 사실(1회 이상)이 있는 기업 및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범위반 사실 확인 시(범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) 사업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
※ 위반사실 적용 법률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
#### 주의사항

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
- ①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
  - ②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  - ③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